

부산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0가합4983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률

담당변호사 박은식, 강정목

피고E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요한

변론 종결2021. 7. 21.

판결 선고2021. 9. 8.

주 문

1. 피고와 F 사이에 2016. 1. 25. 체결된 318,399,500원의 증여계약을 308,578,472원1)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131,069,422원, 원고 B에게 33,929,052원, 원고 C에게 110,582,184원, 원고 D에게 32,997,8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제1 예비적으로, 피고와 G 사이에 2016. 1. 25. 체결된 318,399,500원의 증여계약을 229,6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2020.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97,538,000원, 원고 B에게 25,249,000원, 원고 C에게 82,292,000원, 원고 D에게 24,556,000원²⁾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2020.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제2 예비적으로, 피고는 F 및 G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7,538,000원, 원고 B에게 25,249,000원, 원고 C에게 82,292,000원, 원고 D에게 24,556,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원고들은 아래 나.항 기재 F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내지 F, G의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들이다.
- 2) 피고는 위 F의 아들이자, G의 동생이다.

나. F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F는 H의 FX외환선물거래를 빙자한 투자자 및 투자금 모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중간모집책으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이유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9. 7. 4.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7. 4. 선고 2018고합241,

2019고합64(병합), 2019고합104(병합), 2019고합111(병합), 2019고합119(병합), 2019고합120(병합) 판결], F가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2019. 7. 1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관련 형사판결 중 F의 범행 부분만 발췌]

「2018고합241」

누구든지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H는 포항시 남구 1빌딩 3층에 'J'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FX외환선물거래를 빙자하여 투자금을 수신하고 관리하는 총책, 피고인 K는 피고인 H의 친누나로 중간모집책들을 관리하고 투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L은 피고인 H와 내연관계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F,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공소외 S, 공소외 T은 중간모집책들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H는 2015. 7. 24. 포항시 남구 1빌딩 3층 'J'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투자금에 대하여 매달 5%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1년이 지난 후 원금 상환해 줄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F는 2014. 10. 1.부터 2017. 4. 20.까지 합계 25,735,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119」

피고인 H, F는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F는 2014. 9.경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아로마오일 전문점에서 피해자 A에게 "투자금에 대하여 매달 5%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1년이 지난 후 원금을 상환해 줄 것"을 약정하고 2014. 9. 25. 출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6.까지 합계 27회에 걸쳐

합계 52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F, G에 대한 관련 민사판결(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에서 인정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

1) 원고들은, F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F의 딸인 G 또한 F의 지시에 따라 FX외환선물거래 투자를 소개하는 등 F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를 저질러 원고들에게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F, G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8072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8. 12. 'F, G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7,538,000원, 원고 B에게 25,249,000원, 원고 C에게 82,292,000원, 원고 D에게 24,556,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2020. 8.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 판결에 대해서는 원고들과 F, G 등 당사자들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2020. 9. 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F의 피고에 대한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F는 2016. 1. 25. 자신이 사용하던 G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318,399,5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증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주위적으로, F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 등 책임재산이 없었고, 체납세액 원금 또한 76,000,000원을 초과하였으며, G와 함께 원고들을 기망하여 지급받은 돈의 원금만으로도 합계 570,000,000원에 달하는 등 등 채무초과 상태였음이 명백한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F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 합계인 229,635,000원(= 원고 A 97,538,000원 + 원고 B 25,249,000원 + 원고 C 82,292,000원 + 원고 D 24,55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 A에게 97,538,000원, 원고 B에게 25,249,000원, 원고 C에게 82,292,000원, 원고 D에게 24,556,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하는 금액) 합계액에 대하여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1 예비적으로, 이 사건 증여의 증여자를 F가 아닌 G로 보더라도 G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924,000,000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F와 함께 원고들을 기망하여 지급받은 돈의 원금만으로도 합계 570,000,000원에 달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음이 명백한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G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 합계인 229,635,000원(= 원고 A 97,538,000원 + 원고 B 25,249,000원 + 원고 C 82,292,000원 + 원고 D 24,55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 A에게 97,538,000원, 원고 B에게 25,249,000원, 원고 C에게 82,292,000원, 원고 D에게 24,556,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하는 금액) 합계액에 대하여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제2 예비적으로, 피고는 F, G가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F, G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이용하여 자신의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F, G의 범죄수익 은닉행위를 공동으로 가공 내지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F, G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7,538,000원, 원고 B에게 25,249,000원, 원고 C에게 82,292,000원, 원고 D에게 24,556,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F, G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나아가 F, G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범행 내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전혀 예상하거나 인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해의사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3) 피고 또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과 같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 또한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없다.

3.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등 참조).

나) F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G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7,538,000원, 원고 B에게 25,249,000원, 원고 C에게 82,292,000원, 원고 D에게 24,556,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F의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5.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관련 민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이 사건 증여일인 2016. 1. 25. 당시 원고들의 F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들의 F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F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 가)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진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해운대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사업소득으로 69,240원의 수입금액(소득금액 22,295원) 이외에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 등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증권거래세·종합소득세 등 체납세액의 합계가 76,203,780원(= 2013년 증권거래세 3,180,950원 + 2013년 종합소득세 632,810원 + 2013년 양도소득세 68,000,740원 + 2013년 종합소득세 316,210원 + 2014년 증권거래세 4,073,07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F의

원고들에 대한 합계 229,635,000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또한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F가 사용하던 G의 계좌 잔액이 374,074,857원인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졌고, 당시 피고에게 지급한 318,399,500원은 이 사건 범행과는 무관한 지인 W, X로부터의 차용금이었으며 그 후로도 계속 G의 계좌 잔액이 200,000,000원에서 400,000,000원인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F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제3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F가 사용하던 G의 계좌는 주로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되던 계좌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에 따라 이 사건 증여 시점을 전후하여 위 계좌와 입금된 돈의 상당부분은 F가 중간모집책 역할을 하면서 원고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배분해 줄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 투자자들에게 송금이 이루어지기도 한 점, ③ 피고에게 증여한 318,399,500원이 이 사건 범행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지인인 Y, X로부터 차용한 돈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차용증 등의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 또한 F에게는 소극재산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 점, ④ 피고 또한 2021. 7. 2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당시 G 계좌에서 H, K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투자자들에게 배분해주어야 할 돈이었으므로 F의 자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사실이고, 그 밖에 입금된 돈들도 대부분 일시적으로 유통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G의 계좌에 있던 모든 돈을 F의 적극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2384 판결,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F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G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318,399,500원을 증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취지상 위 돈의 지급자는 G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21. 1. 20.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증여의 내용과 부합하게 피고가 F로부터 2015. 12.과 2016. 1.에 합계 340,0000,000원 정도를 증여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거나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나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예금계약의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결정하는 것에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한편 피고는, F가 이 사건 증여 당시에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해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는 2014. 9.경부터 H가 주도하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면서 이 사건 증여 당시까지 이른바 '리더' 역할을 담당하던 중간모집책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사실, 나아가 자신의 딸인 G와 함께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배당금이 미지급되어 항의하는 투자자들을 회유하는 등 대처를 해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증여 당시 F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F에게 이 사건 증여 당시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F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수익자익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구체적인 항변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F로부터 증여받은 돈은 피고의 펜션 사업을 위하여 지원받은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증여 이후 2016. 2.부터 F로부터 차용한 돈 또한 2017. 3.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모두 변제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2, 13,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5. 1.경 'Z'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해당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의 종류로 '숙박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증여일인 2016. 1. 25. 피고 명의로 부산 기장군 AA 대 1,014m², AB 임야 236m², AC 대 117m²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3)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1.항의 [인정 근거]에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1, 2, 제9, 10, 11,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진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해운대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F의 아들이었고, G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F의

재산상황이나 자신에게 송금된 돈의 출처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정 등을 잘 알 수 있는 관계에 있었던 점, ② 피고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서 실제 펜션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수익자인 피고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터 잡아 이를 인정할 수도 없는 점, ③ 피고는 2015. 6.경까지는 아무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가 이 사건 범행 내지 이 사건 불법행위가 한창 이루어지던 2016년경에 피고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그 당시 부동산 매수자금 등의 출처는 대부분 F 내지 G 명의 계좌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17. 3.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F 또는 F의 배우자인 AD 등에게 송금된 돈이 피고가 F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변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증여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2)항 기재 사실이나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 또한 이유 없다.

5)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1)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의 내용이 금전의 증여계약이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2. 4. 21.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 의하여 F에 대하여 합계 229,635,000원(= 원고 A 97,538,000원, 원고 B 25,249,000원, 원고 C 82,292,000원, 원고 D 24,5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2020.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인 F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7. 21.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308,578,472원(= 피보전채권 원금 229,635,000원 + 2015. 12. 30.부터 2020. 8. 12.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53,048,194원 + 2020. 8. 13.부터 2021. 7. 21.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5,895,278원)으로서 이 사건 증여액인 318,399,5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은 위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각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 소결론

결국 F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308,578,472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131,069,422원(= 원금 97,538,000원 + 2015. 12. 30.부터 2020. 8. 12.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2,532,343 + 2020. 8. 13.부터 2021. 7. 21.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0,099,079원), 원고 B에게 33,929,052원3) (= 원금 25,249,000원 + 2015. 12. 30.부터 2020. 8. 12.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5,832,794원 + 2020. 8. 13.부터 2021. 7. 21.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847,257원), 원고 C에게 110,582,184원(= 원금 82,292,000원 + 2015. 12. 30.부터 2020. 8. 12.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9,010,351원 + 2020. 8. 13.부터 2021. 7. 21.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9,279,832원), 원고 D에게 32,997,814원(= 원금 24,556,000원 + 2015. 12. 30.부터 2020. 8. 12.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5,672,704원 + 2020. 8. 13.부터 2021. 7. 21.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769,10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들의 제1,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신현기

판사유주현

판사박광일

- 1) 2021. 7.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에는, 229,6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2020.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 기재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다.
- 2) 원고들은 2021. 7.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주위적 청구 제2항, 제1 예비적 청구 제2항 및 제2 예비적 청구 제1항에서 원고 D가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돈을 '14,556,00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소장 및 2021. 6.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그 금액이 '24,556,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들이 변론과정에서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살펴보면 일관하여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 합계액은 229,635,000원으로서 원고 D가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돈이 '24,556,000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계산되어 있는 점, 원고들에 대한 관련 민사판결에서 당초 원고 D에게 인정되는 금액을 '14,556,000원'으로 선고하였다가 2020. 8. 18. 이를 '24,556,000원'으로 경정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4,556,000원'이라는 기재는 오기로 보이므로 원고 D가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돈을 모두 '24,556,000원'으로 선행한다.
- 3) 단수처리 과정에서 남게 된 1원을 더한 금액이다. 이하 원고 C, 원고 D에게서도 동일하다.